

인권정보자료실  
Mm1.7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 재외동포 등 관련 자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2  
0  
0  
1  
년

국  
정  
감  
사

재  
외  
동  
포  
등

관  
련

자  
료  
집

인권정보자료실  
Mm1.7

펴낸 날짜 : 2001년 11월 16일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 재외동포 등 관련 자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펴낸 날짜 : 2001년 11월 16일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 차례

### ■ 재외동포

- 121 · 재외동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123 · 재외동포의 우리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
- 125 · 재일동포 현황 및 귀화 현황
- 126 · 재일동포 현황 관련
- 127 · 재일한국계 신용조합 현황
- 128 ·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의 현재 진행 상황
- 130 · 조선족 불법체류자 대책
- 132 · 조선족 사회봉괴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대책
- 134 · 조선족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의 문제점 및 중·장기 해결방안
- 136 · 주요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
- 139 · 중국 교포들의 입국사증 신청시 현지 여행사를 통한 보증금 예치제도의 현황과 그 폐해 및 개선 여부
- 141 · 중국 동포 현황
- 143 · 중국 조선족 동포 입국 및 취업문호 확대 대책
- 149 · 중국과 CIS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ODA 지원
- 150 · 중국동포 입국 자유화
- 151 ·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로 추방된 중국인과 중국교포, 조선족의 사증위조를 통한 재입국 사례, 중국의 사증발급기준(연도별, 성별, 처리일수, 사증발급(거부)자 수, 위조사증 적발건 수, 한국 방문목적), 위조여권 밀입국자 현황과 처리결과, 방지대책
- 153 · 한국계 은행설립 추진 현황

## ■ 탈북자

- 233 · 1990년 이후 연도별 중국이 국제법상 난민 인정을 해준 건수
- 234 · 1990년 이후 연도별 중국이 탈북자에 대해 국제법상 난민 인정을 해준 건수
- 235 · 1998년 이후 2001년 8월말까지 연도별 탈북자가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현황을 비자발급 공관별로 표기
- 236 · 2001년 8월 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채택한 '중국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 원문과 한글 번역본
- 244 · 4월 탈북지원단체 관계자 중국 체포사건 경위 및 처리결과(외교부의 대응 포함)
- 245 · 외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응
- 246 · 조선족 사회붕괴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대책
- 248 · 중국 체류 탈북자의 강제송환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전략 추진내용과 중국측 입장
- 250 · 중국, 몽골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조건 및 과정
- 251 ·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법적인 지위 문제
- 252 ·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북한 및 제3국으로의 강제 송환 현황
- 253 ·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처리, 처벌 현황
- 254 · 중국과 몽골의 탈북자와 관련하여
  - 북한 탈북자 관련한 국제단체와 NGO 현황
  -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NGO 현황
  - 외교부가 국내외 단체와 탈북자 문제를 놓고 협조한 내용
- 256 · 중국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257 · 중국의 탈북자 복송자 수
- 258 · 중국체류 탈북자 처리는 중·북한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중국측의 견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
- 259 · 탈북 난민문제 관련 UNHCR 등 협조

- 260 · 탈북자 김용화 문제 관련
- 261 · 탈북자 문제 관련 대책
  - 탈북자 숫자/ 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대책/ NGO와의 협조
- 265 · 탈북자 문제와 관련
  - 국제기구와의 협조/ NGO와의 협조
- 268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270 · 탈북자/ 인권 관련
  -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방향
  - 탈북자의 국적
  - 탈북자의 규모
  - 탈북자의 일반적인 귀순경로 및 절차
  - 귀순 이유
  - 탈북자 대책
  - 난민인정을 위한 정부 대책 및 관련 일지 등
- 282 · 탈북자문제 관련
  - 통상적인 국제법상 난민인정 요건
- 283 ·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

## ■ 해외입양

- 288 · 국외 입양아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 289 · 해외 입양동포 활동 지원 문제

## 재외동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동 법 제2조2항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중국 및 CIS지역 거주동포가 제외됨으로써 동포간 차별이라는 지적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는 입법과정에서 혈통주의 대신 국제적 관행에 따라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임.
- 즉, 혈통주의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우리나라 90.7.10 발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문제에 민감한 관련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정부는 재중동포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재중동포 국적취득 기회 확대, 입국 허용 범위 확대 및 장기체류 허용, 불법체류자 산재 적용 등을 보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중국 및 CIS지역 거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직업훈련 지원, 모국순례, 한글학교 운영지원, 장학사업과 전통문화 전수사업 등을 통하여 이들지역 거주 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우리부는 앞으로도 이들 지역 동포들이 동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과 아울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토록 지원코자 함.

**재외동포의 우리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

-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의 시민권 취득시 이로 인한 우리국적 상실로 출입국 등이 불편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 이중국적 허용을 요청해 왔음.
- 우리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고 있는 바, 이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나라 국민에 대하여는 출입국의 자유, 투표권, 참정권, 경제활동상의 자유 등 일정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병역, 납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국인과의 구분이 되는데,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가 2개 국가로부터 부과되어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이중국적 허용시 우리 국민의 해외이주 대상국이나 동포거주국 정부의 경계심을 유발시켜 국민의 해외 진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정부는 상기 제반 문제점을 야기 시키지 않고 이중국적 부여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99.12.3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들의 한국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의 장려 및 재산권 행사 등 이익보호를 위하여 국내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이와 같은 개선 조치와 별도로 많은 재외동포들이 이중국적 제도를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 이중국적 허용문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음.

## 재일교포 현황 및 귀화 현황

### 1. 재일동포 현황

- 1999년 : 660,214명
  - 민단계 : 43만명 추산
  - 조총련계 : 12만명 추산(기타 일반 및 장기체류자)
- 2001년 : 639,269명
  - 민단계 : 42-43만명 추산
  - 조총련계 : 11-12만명 추산  
(기타 일반 및 장기체류자)

### 2. 일본 국적 취득 현황

- 1998년 : 9,561명
- 1999년 : 10,059명
- 2000년 : 8,584명. 끝.

## 재일동포 현황 관련

### 1. 최근 3년간 재일동포 현황

- 1999년 : 660,214명
- 2001년 : 639,269명

2. 재일동포 현황 파악 관련, 일본 정부는 민단과 조총련과의 구분 및 재일동포의 일본 국적 취득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있음. 끝.

## 재일한국계 신용조합 현황

- 재일한국인신용조합은 56년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수가 일본 전역에 걸쳐 34개까지 증가한 바 있음.
-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과 부실 채권에 의한 경영악화로 6개 조합은 기퇴출되고 10개조합은 파탄 처리중이며, 현재 18개 조합만이 영업중임. 끝.



##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의 현재 진행상황

### 1. 경 위

- 99.10 자민·자유·공명당간 연정 구성시 지방참정권 법안 성립 문제가 정책 합의사항에 포함됨으로써 동 문제 조기 실현의 토대 마련
- 2000.1월 공명·자유당이 「영주외국인 선거권 부여 법안」을 정기국회에 공동 제출
  - 6.2 일본 衆議院이 해산됨에 따라 동 법안 불성립
- 2000.7.4 개최된 특별국회에 공명·보수당이 공동으로 제차 새로운 법안을 제출
  - 금번 법안에는 지난 1월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 국적자는 참정권 부여대상에서 당분간 제외' 조항 삭제
  - ※ 법안 요지
    - 대상 : 만20세 이상 영주외국인
    - 부여 권리 : 지방 공공단체 의원 및 長 선거권(피선거권 및 국정선거권 제외)
    - 절차 : 상기 영주외국인 중 선거권 취득 신청자(신청주의)
- 자민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모임 결성 및 신중 여론의 확산 등으로 지난 12.1 폐회된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불성립

- 공명당이 지난번 정기국회(2001.6.29 종료) 기간중 표결 처리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자민당내 반대론 확산으로 표결처리를 연기하고, 계속 심의안건으로 처리한다는데 합의(5.29)

- 재일민단은 지방참정권 법안 성립 추진을 위한 전국 궐기 대회 개최(6.5, 동경)

### 2. 우리측 입장

-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외무장관회담 등 각종 정부간 회담 계기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성립에 대한 강한 기대 표명
  - 재일한국인 사회의 역사적 경위, 일본사회의 개방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 한·일관계 발전 등의 측면 고려
- 동 법안이 조기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예정

## 조선족 불법체류자 대책

- 금년 7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 총 22만여명중 28.5%인 62,000여명의 조선족이 불법체류중이며, 국내 체류 조선족 총 10만여명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최근 몇 년간 연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조선족은 밀입국 알선조직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상밀입국, 여권·비자 위조 등 불법적인 입국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국내 입국후에는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우선 중국정부의 협조하에 밀입국 브로커 및 범죄조직에 대한 엄정한 단속, 공·항만에서의 위·변조 여권 및 사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 아울러,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추후 적법 절차에 따른 재입국을 허용하는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하는 등 국내의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체류 불법체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실에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보상, 체불 임금 정산 등의 권리구제시까지 출국을 유보하고,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한·중간 현격한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조선족 불법체류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법 입국·체류는 줄여 나가는 대신, 국내 노동시장, 산업구조 조정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출입국 문호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조선족 사회붕괴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대책

- 조선족들은 한국으로의 입국이외에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동북3성 지역에서 북경, 상해 등 대도시로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는 조선족의 상당수가 대도시에 거주함.
- 상당수 조선족 인구의 대도시 이동에 따라 연변자치주내 조선족 인구비중 감소로 인해 향후 조선족의 실질적 자치권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연변의 경우 1952년 자치주 설립당시 조선족이 전체인구의 62%를 차지했으나 1965년 46%, 1976년 41%, 1996년 39%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에는 자치주 전체인구의 20%, 2050년에는 15%로 감소되어 민족구역 자치 실현조건(30% 이상)을 상실한 가능성
- 또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중 국제결혼 증가 및 북경 등 대도시 진출(주로 한국인 상대업소 종사)로 조선족 사회내 성비 불균형 문제가 대두하고, 2세의 출생률도 감소함에 따라 조선족사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연변 용정시의 경우 총각:처녀 비율이 1996년 20:1에서 1997년 22:1로 증가

- 일단 도시로 진출한 조선족 여성은 농촌지역의 조선족 남성과의 혼인을 기피
- 상당수의 조선족 남성들이 북한출신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 증가

- 인구의 대규모 이동과 출산률 감소등 학생원천의 감소로 조선족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 많은 조선족 학교가 존폐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임.
  - 연변의 조선족 소학교는 1985년 419개에서 1995년 177개로,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감소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중국정부의 입장과 배치되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선족이 중국사회에서 성공하여 존경받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선족 사회의 육성과 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2000년말 현재 한국기업의 동북3성 투자는 건수 기준으로 중국 전체투자의 약 40%차지), 조선족과의 실질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시행할 예정임.

**조선족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의  
문제점 및 중·장기 해결방안**

**1. 입국비자 발급관련 문제점**

○ 조선족의 불법적인 한국 진출 및 불법체류 문제

- 많은 조선족들이 경제적인 동기에서 한국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방문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여권, 사증 위·변조, 위장결혼 사례 증가
- 한국 입국을 위한 고액의 브로커경비(1,000만~1,300만원) 등 지출로 국내 입국시 불법체류가 불가피한 상황 발생
- 조선족 체류현황

연도	비자발급 건수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전체외국인 불법체류자
1998	90,571	37,233명	26,188명	70.3%	99,537명
1999	181,693	67,036명	42,169명	62.9%	135,338명
2000	255,228	91,455명	57,348명	62.7%	188,995명
2001.6월	조선족사	101,277명	69,536명	68.6%	232,807명

○ 위·변조 서류 등을 통한 입국사증 신청

- 입국사증 취득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여 위·변조 서류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수

- 상기 브로커 개입에 의한 사기 피해 및 공무원에 대한 무고 사례 빈발

**2. 중·장기 해결방안**

○ 친척방문 연령 제한 완화

- 현 행 : 만50세 이상으로 8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
- 개선안 : 연령제한을 현재의 50세 이상에서 하향조정 (법무부와 협의중)

## 주요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

가. 1998년말 기준 재외동포현황(추정치)

국가명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	기 타	계
미 국	602,921	1,119,570	140,221	194,834	2,057,546
중 국	1,995,561	1,637	46,380	0	2,043,578
일 본	0	564,761	72,107	23,346	660,214
CIS	469,896	10,742	4,557	1,662	486,857
캐나다	55,540	43,548	10,939	1,014	111,041
브라질	4,081	42,485	302	48	46,916
호 주	14,380	16,754	13,219	480	44,833
아르헨티나	5,601	24,963	451	233	31,248
독 일	5,087	8,479	12,103	0	25,669
뉴질랜드	1,464	8,425	1,895	926	12,710
기 타	12,538	18,376	74,467	18,565	123,946
총 계	3,167,069	1,859,740	376,641	241,108	5,644,558

나. 2000년말 기준 재외동포현황(추정치)

국가명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	기 타	계
미 국	638,873	1,125,198	161,923	197,173	2,123,167
중 국	1,738,200	1,696	88,362	59,300	1,887,558
일 본	0	551,942	73,579	14,713	640,234
CIS	507,749	4,110	6,555	3,280	521,694
캐나다	71,327	54,328	13,711	1,530	140,896
브라질	4,265	43,588	244		48,097
호 주	13,820	16,157	15,697	1,553	47,227
아르헨티나	4,000	20,520	360	190	25,070
독 일	6,747	7,916	15,497	332	30,492
뉴질랜드	3,101	10,942	4,295		18,338
기 타	5,185	22,302	111,412	32,137	171,036
총 계	2,993,267	1,858,699	491,635	310,208	5,653,809

※ 재외동포현황은 격년으로 산출하고 있어, 1999년말 통계는 없음.

## 국민 출국자 현황

연도 \ 국적	'98	'99	'00	'01.6월
전 체	3,026,715	4,268,102	5,115,359	2,667,813
중 국	487,226	824,427	1,038,140	551,700
필리핀	63,449	110,535	16,829	95,077
베트남	27,723	36,515	42,742	27,900
인 도	10,501	13,286	15,437	8,790
파키스탄	1,300	1,659	1,729	861

## 외국인 입국자 현황

연도 \ 국적	'98	'99	'00	'01.6월
전 체	3,506,154	3,920,909	4,370,596	2,180,671
중 국 (조선족)	104,286 (14,641)	204,807 (26,529)	279,572 (60,176)	155,065 (27,408)
필리핀	31,270	44,869	47,511	21,647
베트남	8,303	12,085	15,520	5,599
인 도	19,218	24,472	27,392	12,338
파키스탄	5,670	11,379	12,440	5,774

## 중국 교포들의 입국사증 신청시 현지 여행사를 통한 보증금 예치제도의 현황과 그 폐해 및 개선여부

### 1. 현 황

- 중국 여행사들은 모집한 관광객중에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당국의 벌금 등 제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관광객 모집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여행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조선족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신원이 불확실한 한족에게도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음.
- 예치금액도 여행사마다 일정하지 않으나 조선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만위엔-10만위엔, 기타 한족에 대해서는 3만위엔-5만위엔을 예치토록 하고 있음.

### 2. 문제점

- 여행사에 예치해야하는 보증금이 중국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나 사인간의 계약행위이므로 우리 공관에서 통제하기 어려움.
- 또한 중국인의 사증취득이 한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함.

### 3. 개선대책

- 여행사의 보증금 예치요구 행위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한 보증금 액수를 낮추도록 제도활동 강화
- 싱가포르등은 보증금을 직접 공관에 예치토록 하고 불법 체류자 경우 등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중국 동포현황

- 거주지역별 동포현황(2001.1.1 기준)
  - 북경·천진 : 10만명
  - 요녕성 : 21만명
  - 연변조선족 자치주 : 74만명
  - 길림성 : 33만명
  - 흑룡강성 : 41만명
  - 상하이 : 2만명
  - 칭따오 : 7만명
  - 홍콩, 마카오 : 1만명
  - 합 계 : 189만명
- 기능별 한인 단체현황
  - 한인회(14), 상공인단체(32), 학교(6), 유학생회(2), 종교(2), 기타(2)
- 동포사회 형성 배경 및 현황
  - 근세기의 어려운 경제상황 또는 일제 침략을 피해 중국 영토로 이주하여 형성된 재중동포는 현재 중국 전역에 걸쳐 189만명임.

-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한족 중심의 중국이라는 틀안에서의 민족자치 허용과 중화문화로의 동화를 목표로하고 있음.
-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과 우리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재중동포들은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중국 조선족 동포 입국 및 취업문호 확대 대책

### 1. 현황 및 문제점

#### 가. 조선족 불법체류 현황

- 한국에 불법 체류중인 조선족 중국인은 매년 증가하여 2001.8월말 현재 약 64,000여명이 불법체류
  - 전체 불법체류자중 비율은 29.1%
  - 조선족 전체 체류자는 약 10.6만명으로 추산

#### < 불법체류자 연도별 현황 >

(단위 : 만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8월
전 체	9.95	13.5	18.9	22.0
조선족	2.61	4.21	5.73	6.4
비 율	26.2%	31.2%	30.3%	29.1%

※ 출처 : 법무부

- 한국과 중국에서의 임금격차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려는 조선족은 많고 한국에서의 수요도 상당한데 비해, 한국입국 및 취업 문호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서 비정상적인 입국 및 불법체류 문제 발생



- 조선족의 입국열기는 최근 중국의 실업문제와도 관련되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나. 불법체류와 관련된 문제점

### (비정상적인 입국시도)

- 불법 체류 조선족 동포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위장하거나, 위변조 서류(호구부, 신분증, 여권, 초청장 등)를 통해 한국 입국 목적을 정당화하거나, 위장결혼을 시도하거나, 또는 밀입국 방법 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

### (브로커 개입에 따른 거액의 입국비용 지출)

- 비정상적인 입국시도에는 브로커가 개입, 상당액의 금전(한화 약 700-1,000만원)을 편취

- 노동시장의 시장경제 원리 왜곡으로 인한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 발생

- 입국문호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거액의 입국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며, 입국비용이 불필요하면 한국에서의 임금은 사채 상환이 아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이 가능하고 현재와 같은 장기간 체류도 불필요

- 불법체류자 1인당 평균 한화 700만원 비용 지불 가정 시 그간 조선족 불법체류와 관련 음성적 경제의 규모는 약 4200억원으로서 매년 420억원 규모로 추산

### (조선족 사회 불안정)

- 조선족 동포들의 장기 불법체류는 가정 파괴와 인구감소, 성비불균형, 교육위기 등 조선족 사회 전반의 점진적인 붕괴로 연결
  - 위장 및 사기결혼을 통한 한국입국 시도는 조선족 인구의 대도시 이주증대 현상과 함께 조선족 사회의 인구감소와 성비 불균형 심화를 촉진

### (조선족 사회와 한국사회와의 갈등)

-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힌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시와 차별, 이에 대한 조선족 사회의 한국에 대한 반감 증폭
  - 중국내 한국인 관련 사고의 대다수에는 조선족이 연루
-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를 불법화함으로써 이들의 범죄 침단화를 조장하며, 특히 구로구 일대에 형성된 소위 조선족 타운은 밀입국 알선, 마약거래, 폭력조직 활동, 도박 행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심화
- 불법취업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고용주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시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재외동포 권익보호 정책에 배치)

- 상기의 현실은 재외동포 권익보호를 위한 재외동포법 제정 등 국민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방향과 배치
- 노동 수급의 시장경제 원리와 현실을 무시한 제도 고수로 인해 조선족 동포들에게는 혜택이 적거나 사증심사 시와 출입국 검사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 발생
- 특히 화교자본을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활용한 중국의 화교 정책과 커다란 대조

## 2. 대책

### 가. 입국 및 취업문호 확대

- 여사한 일련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입국 및 취업문호 제한의 완화 내지 해제가 필수적
  - 조선족의 한국내 취업은 주로 3D 업종에 집중되어 국내 실업문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국내체류 인원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재외동포법 제정 취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조선족 동포에 대한 입국 및 취업문호 완전개방을 목표로 점진적 확대 필요
  - 입국문호 확대 시 불순분자의 위장입국 기도 증대 가능성과 관련 전문 조사인원 보강 등 보완대책 마련
  - 조선족 입국문호를 전면 개방하더라도 국내 상시체류 조선족 수는 30-4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

- 조선족이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경우, 거액의 입국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장기간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할 필요가 없게 되고, 조선족의 대한민국 인식도 개선되어 한국과 조선족 사회간 유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됨은 물론 조선족을 한중 경제발전 나아가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 가능
- 재외동포법 제정당시의 중국정부의 반대는 한국의 법으로 중국인을 규율(특히 참정권 부여 등)하는데 반대한 것이었는 바, 조선족을 우리의 법규상에 명문화하지 않는 한, 우리의 출입국 정책 상 조선족에 대한 입국 및 취업 문호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나. 고용허가제 조속 도입

- 조선족에 대한 입국 및 취업문호 완전개방을 목표로 조속 고용허가제를 도입, 수용 가능한 조선족 숫자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 동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
  - 매년 3-5만명 정도의 증가를 통해 국내 실업 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 극소화 배려

### 다. 현 제도의 탄력적 운용

- 상기제도 시행시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선족의 국내 입국 및 체류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기사증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수회 연장, 장기사증 발급효과 거양

- 고용허용분야 제한(3D 업종 위주), 고용주의 신분 보증서, 한국어 능력 등 연장허용 기준 마련

#### 라. 친척방문 연령제한 철폐

- 현재 친척방문의 대상은 한국 초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인 자로서 1948년 이전에 헤어진 50세 이상인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연령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친척상봉이 가능하도록 배려

#### 마.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 현 산업연수생 제도는 연수생 선발과정 부조리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입국 시와 유사한 액수의 거액을 지불하고 한국 입국후 연수지 이탈, 불법체류 등 부작용 심대
  - 2001.1월말 현재 조선족 연수생 이탈율 52%(23,598명중 12,279명)
- 산업연수생 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칙을 기반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단기적으로는 현 제도의 보완책 마련
  - 연수생 선발시 정부당국의 감독 및 사후 관리 강화
- 조선족 사기피해자(공식집계 상 약 1만명)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이나, 이미 양 정부간 피해구제를 합의한 바 있고 피해 당사자와 중국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감안, 조기에 적절한 구제책 마련
  - 1,000명의 산업연수생 추가 배정으로 동건 종결 추진

### 중국동포 입국 자유화

- 금년 7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 총 22만여명 중 28.5%인 62,000명이 중국동포이며, 국내 체류 중국동포 총 10만여명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연100%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정부가 중국동포에 대해 입국 자유화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에 대량유입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국내 테러사건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수출감소,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편 등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어려움과 중국동포 사회의 공동화에 대한 동포사회내 심각한 우려 등에 비추어 중국동포의 대량유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정부는 99.12.3 중국동포의 친척방문 허용범위를 완화하였으며, 국내의 초청자 없이도 동포1세 입증서류 제출 시 사증을 발급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친척방문은 만 50세이상으로 연령제한 하향조정, 8촌 이내로 친척범위 확대
- 앞으로 우리정부는 국내 경제상황, 한·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동포의 방문문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중국과 CIS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ODA 지원

1992.8.18. 평壤에서 실시한 동포회합을 위하여 총 19억 원의 예산을  
 1991년 총 10억 원에서 1992년 19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한편, 현지합본의 지원은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절감하는 한편,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1992년 예산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중국과 CIS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ODA 지원

○ 아시아 지역은 우리와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ODA 사업의 효과가 높아 중점지원대상이 되고있으며, 특히 중국은 매년 우리 유무상원조의 1-2위 수원국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CIS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민주주의 정착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유무상 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체 ODA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 ODA 사업으로 중국 및 CIS 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하나, 이들 국가들에 대한 ODA 지원은 우리와의 경협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측면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연도	총액	유무상원조	ODA	기타	비율	비율
79	835	684	152	157	82	20
80	1,213	1,233	231	943	97	79
81.7월	830	658	178	44	79	19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로 추방된 중국인과 중국교포, 조선족의 사증위조를 통한 재입국 사례, 중국의 사증발급기준(연도별, 성별, 처리일수, 사증발급(거부)자 수, 위조사증 적발건 수, 한국 방문목적), 위조여권 밀입국자 현황과 처리결과, 방지대책

### 1. 강제퇴거자 현황

	'96	'97	'98	'99	'00
한 국	836	1,336	6,272	1,284	2,430
조선족	8,895	8,320	16,698	6,538	5,882

### 2. 위·변조 적발 현황

연도	총계	여 권				사증 위·변조	기 타
		소계	위·변조	사진교체	기타		
'98	940	878	42	743	93	62	/
'99	895	684	162	427	95	205	6
'00	1,503	1,233	231	943	59	256	14
'01.7월	866	658	128	445	85	194	14

### 3. 사증발급 및 거부 현황

공관명	사증발급현황	'98	'99	'00
중국 (대)	발급건 수	56,112	80,983	88,213
	거부건 수	2,551	4,956	9,996
	거부율(%)	4.35	5.77	10.18
상해 (총)	발급건 수	12,194	36,046	50,332
	거부건 수	10	102	594
	거부율(%)	0.08	0.28	1.17
청도 (총)	발급건 수	/	/	14,387
	거부건 수	/	/	2,414
	거부율(%)	/	/	14.4
심양 (총)	발급건 수	/	22,652	68,959
	거부건 수	/	8,452	27,674
	거부율(%)	/	27.2	28.6

#### ○ 위조여권 등을 이용한 밀입국 방지대책

- 금년 10월부터 현행 사진부착 방식의 여권을 대체하여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사진전사 방식의 여권을 발급하 나갈 예정

### 한국계 은행설립 추진 현황

- 한신협산하 신용조합들의 파탄 또는 경영부실 등을 계기로 재일동포사회가 한신협과 한일은행 설립위원회측의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신규은행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자본금 모집 어려움 등으로 포기한 바 있음.  
- 한신협 산하 조합은 당초 34개에 이르렀으나, 이중 16개 조합이 파탄하고 현재 18개 조합만이 영업 중
- 그러나 한신협 산하 신용조합의 파탄 내지 부실화는 재일 동포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한국계 신용조합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동 조합들의 배후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신규은행 설립을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정부는 주일대사를 통하여 재일동포사회가 민단 등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조속한 시일내 동포은행을 설립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으며, 재일동포들은 지난 6.7 신규 은행 설립을 위한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7.30 발기인 대 회를 개최하여 발기 자본금 176억엔, 은행명 Dragon Bank로 확정하였으며, 10월중 신은행 발족을 목표로 범 동포적인 자본금 모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앞으로 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적정 규모의 자본금 모집, 건실한 동포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임.

1990년 이후 연도별 중국이 국제법상 난민 인정을 해준 건수

-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국제법상 난민임을 인정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한 사례 없음.

1990년 이후 연도별 중국이 탈북자에 대해 국제  
법상 난민 인정을 해준 건수

-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탈북자에 대해 국제법상 난민임을 인정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한 사례 없음.

98년 이후 2001년 8월말까지 연도별 탈북자가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현황을 비자발급  
공관별로 표기

입국자수	98	99	00	01(7.31)
중국	38	80	123	118



2001년 8월 9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채택한 '중국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 원문과 한글 번역본

가. 주요내용

- 북한출신 망명신청자(특히 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사료되는 사람들조차도)들이 조직적으로 망명이 거부되고 송환된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우려를 표명함.
- 위원회는 중국정부가 모든 난민 및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당사국이 이런 목적에서 난민자격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적 또는 행정적 규정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나. 원문 전문 - 별첨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hin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eighth and ninth periodic report of China (CERD/C/357/Add.4, Parts I, II and III), which were due on 28 January 1997 and 28 January 1999 respectively, at its 1468th and 1469th meetings (CERD/C/SR.1468 and 1469), held on 31 July and 1 August 2001. The eighth and ninth periodic report of China consists of three separate parts. Part I covers the whole of China, with the exception of the Hong Kong and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which are covered by Part II and Part III respectively. At its 1480<sup>th</sup> and 1481<sup>st</sup> meetings, held on 8 and 9 August 2001,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opportunity to continue its dialogue with the State party, including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Hong Kong and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The Committee was encouraged by the attendance of a large delegation representing important governmental departments as well as the Hong Kong and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3. The Committee welcomes the detailed and comprehensive report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the contents of which correspond with the Committee's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reports. The additional or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in response to the wide range of questions asked by Committee members is also appreciated.

4. In view of the dialogue held, the Committee wishes to emphasize that

irre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uthorities and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and the principle "One Country; Two System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as the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its implementation on its entire territory.

5.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policy-making and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standard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of a territory as vast as China with more than 1.2 billion inhabitants, including 55 minority nationalities.

#### B. Positive aspects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promot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economically backward regions inhabited largely by minority populations, including Inner Mongolia, Guangxi, Tibet, Xinjiang, Guizhou, Yunnan and Qinhai. The Committee notes in particular th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poverty alleviation projects financing the construction of primary schools in western China.

7. The Committee notes with interest the existence and functions of the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created under the State Council as the department in charge of ethnic affairs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Commission should be headed by a person belonging to a ethnic minority.

8. The Committee notes that as a result of its previously expressed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he recently conducted 2001 Population Censu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cluded questions which would help to determinate the ethnic and racial composition of the region and allow for the identification of minority groups and an analysis of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9. The Committee welcomes the extensive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in the preparation of, in particular, the part of the State party report pertaining to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indication by the delegation that projects are already under way in

that region to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identifi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uring those consult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language training for immigrants, mainly of Nepalese, Pakistani and Bangladeshi origin.

10. The Committee notes article 25 of the Basic Law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Macau, giving a constitutional right to all Macau residents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irrespective of, inter alia, their nationality, descent,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 C.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11.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notes that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ll nationalit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equal. The State protects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inority nationalities..." In view of this provision, the Committee seeks clarification with regard to existing guarantees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i.e.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and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review its legislation to ensure the adoption of a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12.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2 and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notes the prohibition of the "incitement of national enmity or discrimination" by any organization or individual provided by articles 149 and 250 of the 1997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 Committee recalls that the stipulated requisites of serious or flagrant circumstances or consequence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genera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s giving full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its domestic legal order and ensure the penaliz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s well as access to effective protection and remedies through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or other State institutions, against all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13. The Committee notes that economic development in minority regions